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 영 학 석 사 학 위 논 문

# FTA 미소기준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2019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통 상 물 류 학 과

고 태 인

경 영 학 석 사 학 위 논 문

# FTA 미소기준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조 찬 혁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통 상 물 류 학 과

고 태 인

# 고태인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2월 22일



위원장 지리학박사 이정윤 (인)

위원 경제학박사 김철수 (인)

위원 경영학박사 조찬혁 (인)

# 목 차

표 목차 .....	iii
ABSTRACT .....	v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4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5
1. 미소기준 .....	5
가. 미소기준의 개요 .....	5
나. 미소기준 적용예시 및 최신 활용사례 .....	9
2. 선행연구 .....	11
가. 미소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	11
나. FTA 활용 설문에 관한 선행연구 .....	12
III.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	14
1. 연구설계 및 연구방향 .....	14
2.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 .....	16
가. FTA 미소기준 활용분야 .....	17
나. FTA 미소기준 인식분야 .....	17
다. FTA 미소기준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분야 .....	17
라. FTA 재협상 분야 .....	18

3. 분석방법 .....	19
IV. 분석결과 .....	20
1. 표본의 일반적 현황 .....	20
가. 설문응답자의 특성 .....	20
나. 설문대상 기업의 특성 .....	21
다. 미소기준 활용실태 .....	23
라. 미소기준 인식수준 .....	27
마. 미소기준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	31
바. FTA 재협상을 통한 미소기준 개정 .....	34
2. 교차분석 결과 .....	36
가. 화주관세사 집단차이(업체형태)에 따른 교차분석 .....	36
나. 활용실적 유무에 따른 교차분석 .....	45
V. 결론 .....	51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5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55
참고문헌 .....	56
설문지 .....	59

## 표 목 차

<표 2-1>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	6
<표 2-2> 협정별 미소기준 .....	8
<표 2-3> 미소기준 적용예시 .....	10
<표 2-4> 미소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	12
<표 2-5> FTA 활용 설문에 관한 선행연구 .....	13
<표 3-1> 설문조사 개요 .....	16
<표 3-2> 설문조사 내용 .....	18
<표 4-1> 설문지 응답자의 특성 .....	21
<표 4-2> 설문지 대상 기업의 특성 .....	22
<표 4-3> 미소기준 활용실적 .....	23
<표 4-4> 미소기준 활용횟수 .....	23
<표 4-5> 미소기준 비중 기술통계 .....	24
<표 4-6> 미소기준 활용을 변화 .....	24
<표 4-7> 미소기준 적용 FTA .....	25
<표 4-8> 미소기준 적용품목 .....	26
<표 4-9> 미소기준 실패경험 .....	26
<표 4-10> 미소기준 실패이유 .....	27
<표 4-11> 원산지자격확대에 대한 인식 .....	28
<표 4-12> 세부사항인지 대한 인식 .....	28
<표 4-13> 미소기준 노하우에 대한 인식 .....	29
<표 4-14> 미소기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인식 .....	29
<표 4-15> 미소기준 문의에 대한 인식 .....	30
<표 4-16> 미소기준 만족에 대한 인식 .....	30

<표 4-17> 협상전략부족에 대한 인식 .....	31
<표 4-18> 미소기준 규정문제점 .....	32
<표 4-19> 미소기준 활용미흡이유 .....	32
<표 4-20> 미소기준 교육부족이유 .....	33
<표 4-21> 미소기준 필요한 행동 .....	33
<표 4-22> 미소기준 개정찬반 .....	34
<표4-23> 미소기준 개정 1순위 FTA .....	34
<표 4-24> 미소기준 개정이유 .....	35
<표 4-25> 미소기준 개정방향 .....	35
<표 4-26> 화주관세사*활용실적 교차분석 .....	36
<표 4-27> 화주관세사*실패경험 교차분석 .....	37
<표 4-28> 화주관세사*실패이유 교차분석 .....	38
<표 4-29> 화주관세사*미소기준문제점 교차분석 .....	39
<표 4-30> 화주관세사*활용미흡이유 교차분석 .....	40
<표 4-31> 화주관세사*교육부족이유 교차분석 .....	41
<표 4-32> 화주관세사*필요한 행동 교차분석 .....	42
<표 4-33> 화주관세사*미소기준개정 교차분석 .....	43
<표 4-34> 화주관세사*개정방향 교차분석 .....	44
<표 4-35> 활용실적*미소기준문제점 교차분석 .....	45
<표 4-36> 활용실적*활용미흡이유 교차분석 .....	46
<표 4-37> 활용실적*교육부족이유 교차분석 .....	47
<표 4-38> 활용실적*필요한 행동 교차분석 .....	48
<표 4-39> 활용실적*미소기준개정 교차분석 .....	49
<표 4-40> 활용실적*개정방향 교차분석 .....	50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he FTA De Minimis

Tae In Go

*Department International 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Due to the many free trade agreements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arts and production processes, rules of origin are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his makes it difficult to use the FTA. The FTA has exceptional provisions for the purpose of mitigating and complementing the strictness of the rules of origin. That is the Intermediate Materials, Accumulation, and the De Minimis. Even though the origin standard is not satisfied due to the specific inverse foreign material put into the product, the De Minimis is an exception rule that the product is recognized as the originating product when the proportion of the inputted foreign material is less than the level specified in the individual agreement. The De Minimis is to expand the scope of origin recognition.

However, the exception provisions and the De Minimis are also different according to the agreement, and the purpose of the exception provisions are not fulfilled. Especially,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De Minimis. Previous studies used literature and example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empirical analysis.

First, we surveyed shippers and customs brokers to understand how they use the De Minimis. The problems of the De Minimis rule were identified and the difficulties felt by the practitioners were identified. Second, the improvement of the De Minimis was derived. Finally, I trie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the FTA negotiation.

The questionnaire is mainly shippers and customs brokers located in

Busan. Frequency analysis, crossover analysis and kai test were conducted on 102 questionnaires. First,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on all ques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were shown. The company type is divided into shippers and customs brokers, and the utilization results are divided into users and non-users. Then, a cross-analysis and a kai test were conducted on shippers, customs brokers, users and non-use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se of the De Minimis is lower than expected. Second, the level of awareness about the De Minimis was not very high. There were not many items that utilized smile criteria. Third, cross - examination of shippers and customs broker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sponse tendency between reasons of insufficient utilization and reasons of lack of education.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sponse tendency between the problem of the De Minimis, the most necessary action, the pros and cons of revision, and the direction of revision. Fourth, crossover analysis between users and non - user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sponse tendency in reasons of lack of use, reasons of lack of education, and revision direction.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sponse tendency between the most needed action and the pros and con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active consideration of shippers' FTAs and cost control for utilizing FTAs are very important for the utilization of the De Minimis. Second, we need to strengthen FTA education and PR for the people in charge. Third, if the amendment is made to the De Minimis, it will be the most practical way to increase the allowable rat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2003년 이래, 미국, EU, 중국, 아세안 등 주요 교역국을 포함한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 발효 중이며 전 세계 GDP 77%에 해당하는 시장에 FTA 네트워크(세계 3위)를 구축해 놓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 그러나 높은 체결률에 비하면 활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FTA 활용률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소위 엉킴 현상이라고 불리는 누들 볼 증후군(noodle bowl syndrome) 또는 스파게티 볼 증후군(spaghetti bowl syndrome)이다.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다 보니, 협정별로 동일물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이 달라서 어떤 FTA에서는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지만 다른 FTA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복잡하고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이 FTA 활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원산지결정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이 있다. 실질적변형 기준은 다시 세번변경, 부가가치, 특정공정 등으로 나뉜다. 복잡하고 엄격한 이들 기준의 한계 또는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 FTA 협정은 여러 가지 보충적 원산지기준(특례)을 두고 있다. 미소기준, 누적기준, 중간재규정, 직접운송원칙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의 통상환경은 제품의 부품 및 공정에 있어서 이미 국제분업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하나의 제품에 역외산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제품 생산의 전 공정이 하나의 국가에서만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효율과 비용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출경쟁력을 가진 제품일수록 높은 기술력을

가진 제품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본래 원산지제도의 목적은 역내와 역외 제품을 구별해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원산지판정에 엄격할 수밖에 없고 원산지규정도 복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과 복잡성을 완화해 원산지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보충적 원산지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보충적 원산지기준 중 중간재나 누적은 그것의 활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상태로 해당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받지 못한다. 중간재 혹은 누적이 활용을 통해 가공공정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이 충족될 뿐이다. 다른 일반기준의 충족을 통해 원산지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산지를 결정짓는 기준이 아닌 단지 원산지 자격의 취득 가능성을 높여주는 데 그친다. 이에 반해, 미소기준은 미소기준의 충족만으로 원산지 자격을 받는다(김영훈, 2014).

또한, 미소기준은 FTA 비수혜 품목으로 분류된 농산물이나 섬유 등의 수출활용방안으로 자주 언급된다(이진철·유광현, 2016)(이석동·이춘수, 2015). 특히 가공식품이나 섬유제품은 가격이 저렴한 역외산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미소기준을 사전에 인지하고 활용한다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소기준의 최근의 활용사례를 보더라도 떡볶이나 고추튀김 등의 가공식품과 코팅장갑 등의 섬유제품에 미소기준의 활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미소기준을 비롯한 보충적 원산지기준이 협정마다 다르고 제약이 많아,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 및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FTA와 관련한 최근의 흐름은 한미 FTA 재협상에서 알 수 있듯이, 기체결 FTA의 지속적인 개선(업그레이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를 체결한 지 십여 년이 넘었고, 그동안 해외시장의 여건도 많이 변화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이 가속화되는 등 각종 변수도 많이 돌출하고 있다. FTA의 활용실태와 영향 및 효과 등을 점검해, 기 체결 FTA 규정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FTA 미소기준은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완화하는 보충적 기준(특례조항)의 일종으로, 여타 다른 특례조항과 달리 비교적 쉽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용한 규정이다. 비록 미소기준 관련 통계자료 및 사례의 정보공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원산지기준 중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원산지 자격을 확대해 FTA 활용을 제고 하는 데 분명히 기여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미소기준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더 많은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개선점 역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무역업계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FTA 미소기준의 활용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소기준 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실무자들이 느끼는 미소기준 활용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이를 통해 미소기준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추후에 있을 FTA 재협상에서 미소기준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으로 되어있고, 제 2장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로 미소기준의 개념과 체계를 정리한 뒤, 미소기준 관련 선행연구, FTA 활용 설문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제 3장은 FTA 미소기준 설문지 관련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제 4장은 FTA 미소기준 설문조사에 기술통계분석을 한다. 우선 설문지 전체문항에 빈도분석을 해 표본의 특성을 기술한다. 업체형태를 화주 그룹과 관세그룹으로 나누고 활용실적 유무에 따라 미활용그룹과 활용그룹으로 나눈 뒤 설문조사의 각 문항에 교차분석 및 카이검정을 실시하여, 미소기준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제 5장은 결론으로 분석결과에 근거해, 미소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본 논문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미소기준

#### 가. 미소기준의 개요

광의의 미소기준이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특정 역외산 재료로 인해 해당 제품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역외산 재료의 비중이 개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특례규정이다(국제원산지정보원, 2014).

협의의 미소기준이란 역외산 재료의 비중이 미미할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세번변경에 실패하더라도) 해당 제품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역외산 재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다른데, 단지 소량의 역외산 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같아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미소기준을 활용하는 것이다.

김구태(2018)는 미소기준 개념 정립과 관련하여, “미소기준의 개념이 세번변경기준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통념으로 인하여 미소기준의 활용이 제약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통념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칠레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sup>1)</sup> 및 한-미 FTA 협정문 표현에서 기인한 것이며, 유럽원산지모델(PEM CONVENTION)<sup>2)</sup>, 한-EU FTA, 한-EFTA, 한-터키 FTA, 한-캐나다 FTA<sup>3)</sup> 협정 조문과 NAFTA

1) 세번변경에 실패한 비원산지재료가 제품가격의 7%이하인 경우 미소기준 인정(NAFTA 401조 제1항)

2) PSR에서 정한 원산지물품의 생산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비원산지재료의 총원가 제품 EXW가격의 10%이하인 경우 허용수준 인정(PEM 부속서1 제5조)

원산지이행규정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소기준이 세번변경의 실패로 인한 원산지 불충족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실무에서 미소기준은 광의의 미소기준 개념 보다 협의의 미소기준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미소기준 최신 활용 사례를 보더라도 여전히 협의의 미소기준 개념으로 미소기준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구분	종류	
일반 기준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생산기준    ▪ 역내가공 원칙</li> <li>▪ 충분가공 원칙    ▪ 직접운송원칙</li> </ul>
	분야별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재            ▪ 누적기준            ▪ <b>미소기준</b></li> <li>▪ 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 세트물품</li> <li>▪ 부속품            ▪ 예비부품·공구    ▪ 포장·용기</li> </ul>
품목별 기준	공통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주식, 부·류·호의 주식</li> </ul>
	개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가공공정기준</li> <li>▪ 선택기준            ▪ 조합기준</li> </ul>

출처 : 관세청 FTA 포털 - 한미FTA 활용 매뉴얼 p42

일반적으로 미소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역외산 재료가 사용된 물품의 경우에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등의 원산지기준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혼합(선택기준과 조합기준)해서 사용한다. 미소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을 단독 또는 혼합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미소기준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 미소기준 허용비율(8~10%)을 부가가치기준 허용비율에 가산할 수 없다.

3)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거나 그 밖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캐나다 FTA 제3.8조 1항)

미소기준 적용대상 물품을 살펴보면 협정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섬유 및 의류(HS제50류~제63류)는 일반품목에 보다 허용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농축수산물(HS제1류~제24류)은 기초농산물(HS제1류~제14류)의 경우에는 아예 적용을 배제하거나 6단위 세번변경 발생을 전제조건으로 거는 등 미소기준의 허용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일반품목은 8~10% 수준으로 허용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소기준은 역외산 재료의 비중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와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대부분의 협정에서 섬유 및 의류는 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중을 계산한다.

또한, 미소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정별로 정의하는 상품가격의 개념(기준가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기준가격으로는 공장도가격(EXW)<sup>4)</sup>, 본선인도가격(FOB)<sup>5)</sup>, 조정가격<sup>6)</sup> 등이 있다. 동일한 역외산 재료를 쓴 동일한 제품에 미소기준을 활용하더라도 협정별 기준가격의 차이에 의해 원산지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이렇듯 미소기준의 전반적인 체계 및 운용은 비슷하나 협정별·품목별로 기준 및 종류가 다르므로 해당 제품에 적용 시, 유의하여야 한다.

- 
- 4) 유통 마진이 없는 공장에서의 제도가격으로 책정된 물품의 가격. 물품이 생산된 현지공장에서 반출 하는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을 말함. 원산지규정에서 역내부가가치기준 유형의 하나.
  - 5) 해당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함.
  - 6)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서 제8조,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까지의 모든 운송비, 보험료, 서비스비용, 부과금 또는 경비를 제외한 가치를 말함. 한·FTA에서는 조정가격을 관세가격(customs value)이라 한다(한·FTA협정 제4.5조). 한·미FTA에서는 조정가격을 조정가치라 한다(한·미FTA협정 제6.22조).

15개의 협정문을 참고해 표로 편집한 협정별 미소기준의 내용은 아래의 <표 2-2>과 같다.

<표 2-2> 협정별 미소기준

구분 (기준가격)		칠레 (조정가격)	싱가포르 (관세가격)	EFTA (EXW)	아세안 (FOB)	인도 (FOB)
가격 기준	일반 품목	8%	10%	10%	10%	10%
	농수 산물	CTSH <sup>7)</sup>	HS 1~14 제외	CTSH		HS 1~14 제외
중량 기준	섬유	8%	8%	10%	10%	7%
구분 (기준가격)		EU (EXW)	페루 (FOB)	미국 (조정가격)	터키 (EXW)	호주 (조정가격)
가격 기준	일반 품목	10%	10%	10%	10%	10%
	농수 산물		HS 1~14 제외	일부 품목 제외 <sup>8)</sup>		HS 1~14 <sup>9)</sup> 일부 품목 제외 <sup>10)</sup>
중량 기준	섬유	8~30% <sup>11)</sup>	10%	7%	8~30% <sup>12)</sup>	10%
구분 (기준가격)		캐나다 (EXW)	중국 (FOB)	뉴질랜드 (FOB)	베트남 (FOB)	콜롬비아 (조정가격)
가격 기준	일반 품목	10%	10%	10%	10%	10%
	농수 산물	HS1~21 <sup>13)</sup>	HS15~24 <sup>14)</sup>	HS 1~14 <sup>15)</sup>		CTSH
중량 기준	섬유	10%	10% <sup>16)</sup>	10% <sup>17)</sup>	10% <sup>18)</su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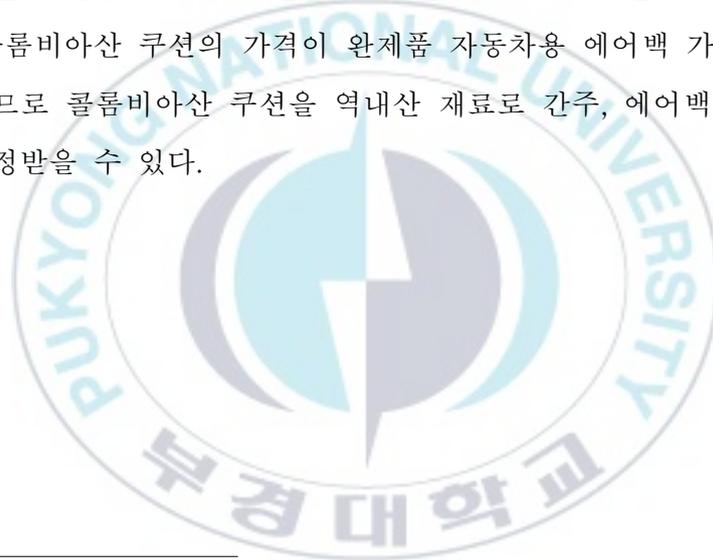
7) HS 6단위 세번변경 발생을 조건으로 미소기준을 허용

8) 어류(제3류), 낙농제품(제4류), 채소류(제7류), 쌀제품(1006호, 제11류) 감귤류·  
 주스류(0805호, 2009.11~39호), 복숭아·배, 살구류(8류, 20류), 동식물성 유지(15  
 류), 설탕(17류)

## 나. 미소기준 적용예시 및 최신 활용사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 적용되는 HS 제 8708호의 자동차용 에어백을 들어 미소기준 적용사례를 설명해보면, 한국산 인플레이터와 호주산 쿠션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산 인플레이션은 제외하고 호주산 커버(HS 3926)와 콜롬비아산 쿠션(HS8708)이 세번변경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호주산 커버는 세번이 변경되나 콜롬비아산 쿠션은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콜롬비아산 쿠션의 가격이 완제품 자동차용 에어백 가격의 10%를 넘지 않으므로 콜롬비아산 쿠션을 역내산 재료로 간주, 에어백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9) HS 01류~14류의 경우, HS 6단위 세번변경 발생을 조건으로 가능
- 10) 어류(제0301호~제0303호, 제0305호~제0308호), 채소류(제0701호~제0710.10호, 제0713호~제0714호, 제0801호~제0810호), 과일류(제0813.10호~제0813.40호)
- 11) 일부 가격기준
- 12) 일부 가격기준
- 13) HS01류~21류의 경우, HS 6단위 세번변경 발생을 조건으로 가능
- 14) HS15류~24류의 경우, HS 6단위 세번변경 발생을 조건으로 가능
- 15) 역외산 재료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 또는 소비되고 그 과정이 단순한 혼합을 초과하는 과정인 경우에만 미소기준을 적용.
- 16) 중량기준, 가격기준 중 선택해서 적용
- 17) 중량기준, 가격기준 중 선택해서 적용
- 18) 중량기준, 가격기준 중 선택해서 적용

**<표 2-3> 미소기준 적용 예시**

완제품(HS8708) 생산개요(BOM)				
품목별 원산지기준 : 4단위 세번변경 * FOB : 30000원, EXW : 28000원				
재료명	HS	단가 (원)	원산지	세번변경여부
인플레이터	8708	4000	한국	변경 필요없음
커버	3926	3100	호주	변경
<u>쿠션</u>	<u>8708</u>	<u>2900</u>	<u>콜롬비아</u>	<u>변경되지 않음</u>
자동차 에어백 (완제품)	<u>8708</u>	10000	원산지 인정? 불인정?	
원산지판정결과				
칠레 FTA (FOB)	아세안, 인도, 미국 등 FTA (FOB)		EFTA EU, 터키 (EX-works)	
8% 이내	10% 이내		10% 이내	
2900/30000=9%	2900/30000=9%		2900/28000=10.3%	
<b>불충족</b>	<b>충족</b>		<b>불충족</b>	

출처 : 국제원산지정보원(2014)의 미소기준 예시 내용을 표로 편집

미소기준의 활용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일반기계류와 전자제품에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소기준의 활용이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민감품목인 가공식품이나 섬유제품에 미소기준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역외산 재료를 이용한 고추튀김이나 떡볶이, 코팅장갑 등이 바로 그 예이다.

## 2. 선행연구

### 가. 미소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김구태(2018)는 미국, 유럽, 아세안의 원산지모델 상의 미소기준 조문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상의 미소기준 조문을 비교분석하여, 미소기준의 개념이 세번변경기준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실무차원에서 확장된 미소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세당국이 협정당사국과 협의 후, 미소기준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활용을 계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상호(2018)는 HS 기계류의 미소기준 활용사례를 제시·분석하여, 기계류에 미소기준이 활용될 여지가 많으며, 기계류에 대한 미소기준을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업의 원가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영훈(2014)은 FTA 특례규정인 미소, 누적, 중간재의 개념과 그 활용방법을 기술하면서, 누적, 중간재와 달리 미소기준은 미소기준의 충족만으로 원산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

고용부(2006)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제도적 보완으로서의 FTA 특례규정의 역할을 조명하고, 각국의 산업수준과 이해관계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복잡해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원산지결정기준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FTA 특례규정은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2-4> 미소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제목	내용
김구태 (2018)	미소기준의 개념 정립 및 실무적용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	미소기준 조문들을 분석, 미소기준의 개념을 확장시켜 실무차원에서의 활용을 주장
강상호 (2018)	HS 기계류에 대한 FTA 미소기준 활용방안 연구	기계류의 미소기준 적용사례를 통해 미소기준 활용방안을 제시
김영훈 (2014)	FTA 원산지기준 특례에 관한 일고- 미소, 누적, 중간재를 중심으로	FTA 특례규정인 미소, 누적, 중간재의 특징과 차이를 규명
고용부 (2006)	우리나라 FTA 협정상 원산지규정의 의의 및 결정기준 비교	미소, 누적, 중간재 특례규정의 역할과 향후 개선점 언급

#### 나. FTA 활용 설문에 관한 선행연구

박진후(2017)는 원산지 관련 업무는 업무영역과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만 의외로 FTA 관련 컨설팅 업무는 영향이 미미함을 실증했다.

김태인, 이준건(2014)은 기업의 특성이 FTA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며, FTA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FTA 활용도도 높아지지만, FTA 성과를 높이려면 FTA 원산지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정재승, 정운태(2013)는 FTA 애로요인으로 FTA별 다른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스파게티 볼 효과가 활용률을 떨어뜨린다고 보았으며, FTA 활용전략과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한 방안으로 전문인력의 육성을 주장했다.

이제홍(2013)은 FTA 체결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직업과 제품 구매국가, 제품 구매이유를 교차분석 한 뒤, 최종적으로 소비자 후생과 교차분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얻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동일한 후생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표 2-5> FTA 활용 설문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제목	내용
박진후 (2017)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관세사 업계의 부가가치 창출	부산에 소재하는 관세사 및 사 무원들을 대상으로 FTA 체결에 따른 부가가치를 실증분석
김태인 이준건 (2014)	FTA 인지도 및 활용도가 FTA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강원도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FTA인식, FTA활용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정재승 정윤태 (2013)	무역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FTA 교육 대상 기업을 중심으 로 FTA애로사항, FTA교육, FTA 컨설팅에 관한 실태분석
이제홍 (2013)	FTA체결국 수입제품 소비자의 후생수준에 관한 기술통계분석	FTA체결국의 국내소비자를 대 상으로 후생수준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본 연구는 FTA를 활용하는 무역업계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소기준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문헌분석과 사례분석만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미소기준 관련 선행연구와 다르다. FTA 활용 설문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기존의 연구들은 FTA의 전체적인 현황 및 관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미소기준에 한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 Ⅲ.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및 연구방향

본 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역업계의 실무자들이 FTA 미소기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얼마나 활용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관세사 및 관세사무원과 화주 및 수출사무원이 주 대상이었다. 조사된 설문표본에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FTA 미소기준의 활용실태 및 인식수준, 미소기준 활용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FTA 재협상에서의 미소기준의 개정방향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단계는 업체형태 및 활용실적 유무에 따라 FTA 미소기준의 인식 및 활용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설문대상자들은 FTA 지식수준, FTA 활용경험 및 활용능력에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를 드러낸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업체형태’와 ‘활용실적’ 두 변수에 교차분석 한 뒤,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정을 하였다.

우선, 업체형태를 ‘화주그룹’과 ‘관세그룹’으로 나누어 ‘활용실적’, ‘실패경험’, ‘실패이유’, ‘미소기준의 문제점’, ‘활용미흡이유’, ‘교육부족이유’, ‘필요한 행동’, ‘개정찬반’, ‘개정방향’ 등 9개 문항에 교차분석 및 카이스퀘어 검정을 하였다. 업체형태를 ‘화주그룹’과 ‘관세그룹’을 나눠 교차분석을 한 이유는 이 두 그룹 간에 FTA와 관련한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관세그룹’이 ‘화주그룹’보다 FTA 지식수준이 높다고 간주하였고 교차분석을 한다면 설문 문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

다.

다음으로, 활용실적을 ‘미활용그룹’과 ‘활용그룹’으로 나누어 ‘미소기준의 문제점’, ‘활용미흡이유’, ‘교육부족이유’, ‘필요한 행동’, ‘개정찬반’, ‘개정방향’ 등 6개 문항에 교차분석 및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다. 활용실적을 ‘미활용그룹’과 ‘활용그룹’으로 나눠 교차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활용경험 및 활용능력의 차이, 즉 미소기준 활용실적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을 나누어 교차분석 한다면 설문 문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 2.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주로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일부 창원) 관세업계의 관세사 및 사무원과 기업체의 수출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로 현장방문과 E-mail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총 120명을 대상으로 105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102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3-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주로 부산에 소재하는 관세사무소 및 기업체의 수출입 담당자
조사기간	2018.10. 15.~2018.11. 09
조사방법	현장방문 및 E-mail

설문지의 형식은 박진후 (2017,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관세사 업계의 부가가치 창출)의 논문을 참고로 기초하였다.

설문지의 항목은 FTA 특정기준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가 없는 상황에서 원산지해설서 및 참고자료, FTA 활용 관련 설문지를 참고해 구성하였다.

설문은 FTA 미소기준 활용분야, FTA 미소기준 애로사항 및 개선분야, FTA 재협상 분야는 명목척도를 사용하였으며, FTA 인식분야만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 가. FTA 미소기준 활용분야

FTA 미소기준 활용분야는 다음과 같은 설문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 1) 미소기준 활용실적이 있습니까? 2) 미소기준 활용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3) 과거 대비, 미소기준 활용률은 어떻습니까? 4) 전체 FTA 업무 중 미소기준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습니까? 5) 미소기준을 어떤 국가의 FTA, 어떤 품목에 적용하였습니까? 6) 미소기준 적용실패 사례가 있습니까? 7) 적용에 실패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나. FTA 미소기준 인식분야(5점 리커드 척도)

FTA 미소기준 인식분야는 다음과 같은 설문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 1) 미소기준은 원산지자격을 확대한다. 2) 협정별 미소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 3) 미소기준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4) 미소기준을 이용한 FTA 비즈니스 모델이나 품목발굴이 필요하다. 5) 미소기준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다./문의할 받은 적이 있다. 6) 우리나라 FTA 미소기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7) 미소기준에 관한 우리나라 FTA 협상전략이 부족해 보인다.

### 다. FTA 미소기준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분야

FTA 미소기준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분야는 다음과 같은 설문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 1) FTA 미소기준 규정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2) 실무차원에서 미소기준의 활용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미소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FTA 미소기준 활용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 라. FTA 재협상 분야(미소기준 한정)

FTA 재협상 분야(미소기준 한정)는 다음과 같은 설문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1) 향후 FTA 재협상 시, 미소기준이 개정되어야 합니까? 2) 어떤 국가의 FTA 미소기준이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까? 3) 그 국가의 FTA 미소기준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4) FTA 미소기준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합니까?

설문지의 구성은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2> 설문조사 내용**

구분	영역	문항수
설문자 배경	성별·나이·학력·직책·업체형태·종업원수·매출액·설립연도	8
미소기준 활용	활용실적·활용횟수·활용율변화·미소기준 비중·적용 FTA·적용품목·실패경험·실패이유	8
미소기준 인식	원산지자격·세부사항인지·미소기준노하우·비즈니스 모델·미소기준 문의·미소기준 만족·우리나라 FTA 협상전략	7
미소기준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미소기준 규정 문제점·활용 미흡 이유·교육 부족 이유·활용제고를 위한 가장 필요한 행동	4
FTA 재협상	미소기준 개정찬반·개정 FTA·개정이유·개정방향	4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된 통계분석은 교차분석 및 카이스퀘어 검정이며 사회과학전산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사용하였다.

교차분석은 설문 항목이 명목척도, 서열척도로 이루어진 경우, 특정 집단 간 빈도 분포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이고 카이스퀘어 검정은 교차분석 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지를 판단하는 분석이다.

교차분석의 검정통계량이 바로 카이스퀘어( $x^2$ )로 기대빈도와 실제빈도 상의 차이에 의해 계산되며, 기대빈도와 실제빈도의 일치정도를 적합도라고 하는데  $x^2$ 값이 작을수록 집단 간의 적합도가 높으며  $x^2$ 값이 커질수록 집단 간의 적합도가 낮아진다. 즉,  $x^2$ 값이 작아 적합도가 높다는 말은 기대빈도와 실제빈도의 차이가 작다는 말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며  $x^2$ 값이 커 적합도가 낮다는 말은 기대빈도와 실제빈도의 차이가 크다는 말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결국, 집단 간의 차이 정도는  $x^2$ 값과 이로부터 나온 유의확률(p-value)을 보고서 판단한다(이제홍, 2013).

## IV. 분석결과

### 1. 표본의 일반적 현황

#### 가. 설문지 응답자의 특성

아래의 <표 4-1>는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총 102개의 표본 중 결측값을 제외하고 서술하면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77명(75.5%), 여성 25명(24.5%)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00부 중 30대(32.4%)와 50대(32.4%)가 가장 많았으며, 40대(28.4%), 20대(4.9%)가 그 뒤를 이었다. 학력은 101부 중 대졸(63.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전문대졸(14.7%), 고졸(12.7%), 대학원졸(7.8%) 순으로 나타났다. 직책으로는 사무원(33.3%)과 관세사(32.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17.6%), 임원(6.9%), 사무장(3.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설문지 응답자의 특성

항목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5	24.5
	여성	77	75.5
	전체	102	100.0
나이	30대	5	4.9
	40대	33	32.4
	50대 이상	29	28.4
	전체	33	32.4
		100	98.0
학력	전문대졸	13	12.7
	대졸	15	14.7
	대학원졸	65	63.7
	전체	8	7.8
		101	99.0
직책	사무장	34	33.3
	임원	4	3.9
	관세사	7	6.9
	사장	33	32.4
	기타	6	5.9
		18	17.6
	전체	102	100.0

#### 나. 설문대상 기업의 특성

아래 <표 4-2>은 설문지 응답자들이 근무하는 기업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총 102개의 표본 중 결측값을 제외하고 서술하면 업체형태는 화주-수출업체(40.2%)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관세법인(26.5%), 합동관세사무소(15.7%), 기타(9.8%), 개인관세사무소(7.8%) 순이었다.

종업원 수는 97부 중 20인 미만(55.9%)이 가장 많았고 20~50인 미만(16.7%), 50~200인 미만(14.7%), 200인~500인 미만(5.9%), 500인 이상(2%)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76부 중 10억 미만(31.4%)로 가장 많았으며, 10억 이상(19.6%), 100억 이상(18.6%), 1000억 이상(4.9%) 순으로 나타났다. 설

립연도는 94부 중 2010년대 이후(28.4%)로 가장 많았으며 1990년대(26.5%), 2000년대(19.6%), 1990년대(17.6%) 순이었다. 종업원수는 최소 0명에서 최대 900명이었고, 평균 58명이었다. 매출액은 최소 6천만원에서 최대 3000억원으로, 평균 516억이었다. 종업원수와 매출액의 편차가 큰 것은 설문대상자인 관세업계와 화주업계의 특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4-2> 설문지 대상 기업의 특성

항목	빈도	퍼센트	
업체형태	합동관세사무소	27	26.5
	개인관세사무소	16	15.7
	화주(수출업체)	8	7.8
	기타	41	40.2
		10	9.8
	전체	102	100.0
종업원수	20인 미만	57	55.9
	50~200인 미만	17	16.7
	200~500인 미만	15	14.7
	500인 이상	6	5.9
	전체	2	2.0
		97	95.1
매출액	10억 미만	32	31.4
	100억 이상	20	19.6
	1000억 이상	19	18.6
	전체	5	4.9
		76	74.5
설립연도	1990년대 이전	18	17.6
	1990년대	27	26.5
	2000년대	20	19.6
	2010년대 이후	29	28.4
	전체	94	92.2

#### 다. 미소기준 활용실태

미소기준 활용실적 질문의 응답을 보면 총 102명 중 80명(78.4%)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22명(21.6%)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3> 미소기준 활용실적**

항목		빈도	퍼센트
활용실적	없음	80	78.4
	있음	22	21.6
	전체	102	100.0

미소기준 활용횟수 질문의 응답을 보면 최소 1회에서 최대 50회까지였고,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한 총 21명(20.6%)로 중에서 1~2회가 10명(9.8%)로 가장 많았고, 3~4회가 2명(2.0%), 5회 이상 3명(2.9%), 10회 이상 21명(20.6%) 순이었다.

**<표 4-4> 미소기준 활용횟수**

항목		빈도	퍼센트
활용횟수	1~2회	10	9.8
	3~4회	2	2.0
	5회 이상	3	2.9
	10회 이상	21	20.6
	전체		

전체 FTA 업무 중 미소기준 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응답을 보면 최소 0.1%에서 최대 90%까지였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미소기준 업무 관련 비중은 평균 5.95%로 나타났다.

**<표 4-5> 미소기준 비중 기술통계**

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미소기준 비중	21	.1	98.0	6.943	19.3561
유효 N(목록별)	21				

미소기준 활용을 변화 질문의 응답을 보면 미소기준 활용실적이 있는 총 22명(21.6%) 중 18명(17.6%)이 변화없다고 가장 많았으며 증가 2명(2.0%), 감소 1명(1.0%)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6> 미소기준 활용을 변화**

항목		빈도	퍼센트
활용을 변화	감소	1	17.6
	변화없음	18	2.0
	증가	2	20.6
	전체	21	

어떤 국가의 FTA에 미소기준 적용해보았는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아세안이 17번(26.6%)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이 10번(15.6%)으로 그다음이었고 EU 7번(10.9%), 인도 6번(9.4%), 페루 5번(7.8%), EFTA와 중국이 각각 4번(6.3%), 베트남 3번(4.7%), 콜롬비아 2번(3.1%), 그밖에 칠레,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터키가 각각 1번(1.6%)으로 나타났다.

<표 4-7> 미소기준 적용 FTA

적용 FTA	횟수	퍼센트
칠레	1	1.6%
싱가포르	1	1.6%
EFTA	4	6.3%
아세안	17	26.6%
인도	6	9.4%
EU	7	10.9%
페루	5	7.8%
미국	10	15.6%
터키	1	1.6%
호주	1	1.6%
캐나다	1	1.6%
중국	4	6.3%
뉴질랜드	1	1.6%
베트남	3	4.7%
콜롬비아	2	3.1%
합계	64	100.0%

어떤 품목에 FTA 미소기준을 적용해보았는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일반기계류가 14번(35.9%)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기계 및 전자장비가 12번(30.8%)으로 그다음이었고 플라스틱 제품과 자동차 오토바이가 각각 2번(5.1%)이었으며, 직물, 의류 및 섬유제품, 화학 제품 및 석유제품, 철강, 비철금속, 가공금속 제품, 전기 및 전자 부품, 기타가 각각 1번(2.6%)으로 나타났다.

<표 4-8> 미소기준 적용품목

적용품목	횟수	퍼센트
식품, 가공농산물, 수산물	0	0.0%
직물	1	2.6%
의류 및 섬유	1	2.6%
목재 및 목재제품	0	0.0%
가구 및 인테리어	0	0.0%
종이와 펄프	0	0.0%
화학제품과 석유제품	1	2.6%
플라스틱 제품	2	5.1%
의약품	0	0.0%
고무제품	0	0.0%
도자기와 시멘트	0	0.0%
철강	1	2.6%
비철금속 제품	1	2.6%
가공금속 제품	1	2.6%
일반 기계류	14	35.9%
전기기계 및 전자장비	12	30.8%
전기 및 전자 부품	1	2.6%
자동차 및 오토바이	2	5.1%
자동차 및 오토바이 부품 및 액세서리	0	0.0%
정밀기기	1	2.6%
의료기기	0	0.0%
인쇄물 및 출판물	0	0.0%
기타 제조업	1	2.6%
합계	39	100.0%

미소기준 적용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총 102명 중 86명(84.3%)이 없다고 하였으며 16명(15.7%)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9> 미소기준 실패경험

항목	빈도	퍼센트
실패경험	없음	86
	있음	16
	102	100.0

미소기준 적용에 실패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미소기준 적용에 실패경험이 있는 16명(17.7%) 중 6명(5.9%)이 화주의 원가관리 실패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원산지증명서류 문제 발생 4명(3.9%), 미소기준 규정 착각 3명(2.9%), 사후검증 실패 2명(2.0%), 기타 1명(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0> 미소기준 실패이유**

항목		빈도	퍼센트
실패 이 유	미소기준 규정 착각	3	2.9
	화주의 원가관리 실패	6	5.9
	원산지증명 서류 문제 발생	4	3.9
	사후검증 인정 못 받음	2	2.0
	기타	1	1.0
	전체	16	15.7

#### 라. 미소기준 인식 수준(5점 리커드 척도)

미소기준은 원산지자격을 확대한다는 명제에 대한 응답을 보면, 총 101명 중 대체로 그러함 49명(48%)로 가장 많았고, 보통임 25명(24.5%), 매우 그러함 19명(18.6%), 대체로 그렇지 않음 6명(5.9%), 전혀 그렇지 않음 2명(2%) 순이었다. 대체로 그러함 49명(48%), 매우그러함 19명(18.6%)의 비중이 높기에 대체로 미소기준이 원산지자격을 확대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4-11> 원산지자격확대에 대한 인식**

원 산 지 자 격 확 대	항목	빈도	
		빈도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음	2	2.0
	대체로 그렇지 않음	6	5.9
	보통임	25	24.5
	대체로 그러함	49	48.0
	매우 그러함	19	18.6
	전체	101	99.0

협정별 미소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는 명제에 대한 응답을 보면, 총 101명 중 보통임이 31명(30.4%)고 가장 많았다. 대체로 그러함 28명(27.5%), 대체로 그렇지 않음 21명(20.6%), 전혀 그렇지 않음 14명(13.75), 매우 그러함 7명(6.9%) 순이었다. 보통임을 기준으로 상하 비중이 엇비슷하다. 미소기준 세부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반반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4-12> 세부사항인지 대한 인식**

세 부 사 항 인 지	항목	빈도	
		빈도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음	14	13.7
	대체로 그렇지 않음	21	20.6
	보통임	31	30.4
	대체로 그러함	28	27.5
	매우 그러함	7	6.9
	전체	101	99.0

미소기준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명제에 대한 응답을 보면 총 101명 중 보통임과 대체로 그렇지 않음이 각각 33명

(32.4%)으로 가장 많았다. 전혀 그렇지 않음 26명(25.5%), 대체로 그러함 9명(8.8%) 순이었다. 대체로 미소기준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표 4-13> 미소기준 노하우에 대한 인식**

비	항목	빈도	
		빈도	퍼센트
미 소 기 준 노 하 우	전혀 그렇지 않음	26	25.5
	대체로 그렇지 않음	33	32.4
	보통임	33	32.4
	대체로 그러함	9	8.8
	전체	101	99.0

미소기준을 이용한 FTA 비즈니스 모델이나 품목 발굴이 필요하다는 명제에 대한 응답을 보면 총 101명 중 대체로 그러함이 42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보통임이 39명(38.2%), 대체로 그렇지 않음 11명(10.8%), 전혀 그렇지 않음 5명(4.9%), 매우 그러함이 4명(3.9%) 순이었다. 대체로 FTA 비즈니스 모델이나 품목 발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4> 미소기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인식**

비	항목	빈도	
		빈도	퍼센트
비 즈 니 스 모 델	전혀 그렇지 않음	5	4.9
	대체로 그렇지 않음	11	10.8
	보통임	39	38.2
	대체로 그러함	42	41.2
	매우 그러함	4	3.9
	전체	101	99.0

미소기준을 문의받은 적이 있다(관세그룹)/문의한 적이 있다(화주그룹)는 명제에 대한 응답을 보면 총 101명 중 전혀 그렇지 않음이 39명(38.2%)로 가장 많았다. 대체로 그렇지 않음 36명(35.3%), 보통임 22명(21.6%), 대체로 그러함과 매우 그러함이 각각 2명(2.0%) 순이었다. 대체로 미소기준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낮은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4-15> 미소기준 문의에 대한 인식**

미		항목	빈도	퍼센트
소 기 준 문 의		전혀 그렇지 않음	39	38.2
		대체로 그렇지 않음	36	35.3
		보통임	22	21.6
		대체로 그러함	2	2.0
		매우 그러함	2	2.0
		전체	101	99.0

우리나라 FTA의 미소기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명제에 대한 응답을 보면 총 101명 중 보통임이 52명(51%)으로 가장 많았다. 대체로 그러함 28명(27.5%), 대체로 그렇지 않음 12명(11.8%), 전혀 그렇지 않음 9명(8.8%) 순이었다. 보통임 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때,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거나 활용이 적어 관심이 낮은 것일 수도 있다.

**<표 4-16> 미소기준 만족에 대한 인식**

미		항목	빈도	퍼센트
소 기 준 만 족		전혀 그렇지 않음	9	8.8
		대체로 그렇지 않음	12	11.8
		보통임	52	51.0
		대체로 그러함	28	27.5
		전체	101	99.0

미소기준에 관한 우리나라 FTA 협상 전략이 부족해 보인다는 명제에 대한 응답을 보면 총 101명 중 보통임이 53명(52%)로 가장 많았다. 대체로 그렇지 않음 21명(20.6%), 대체로 그러함 14명(13.7%), 전혀 그렇지 않음 8명(7.8%), 매우 그러함 5명(4.9%) 순이었다. 대체로 미소기준 전반에 대한 협상 전략 부족을 느끼지 않거나 활용이 적어 관심이 낮은 것일 수도 있다.

**<표 4-17> 협상전략부족에 대한 인식**

협	항목	빈도	퍼센트
상 전 략 부 족	전혀 그렇지 않음	8	7.8
	대체로 그렇지 않음	21	20.6
	보통임	53	52.0
	대체로 그러함	14	13.7
	매우 그러함	5	4.9
	전체	101	99.0

#### 마. 미소기준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미소기준 규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총 102명 중 모든 품목 적용 안됨과 협정별 기준가격 다름이 각각 22명(21.6%)로 가장 많았다. 역외산 재료 허용 비율 낮음 21명(20.6%)이 그다음이었고 미소기준 해석 분쟁 존재 18명(17.6%), 민감품목 관련 효과없음 9명(8.8%), 적용품목 예외조항 존재 6명(5.9%), 기타 2명(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8> 미소기준 규정문제점

항목		빈도	퍼센트
미 소 기 준 문 제 점	모든 품목 적용 안됨	22	21.6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 낮음	6	5.9
	협정별 기준가격 다름	21	20.6
	민감품목 관련 효과 없음	22	21.6
	미소기준 해석 분쟁 존재	9	8.8
	기타	18	17.6
	전체	2	2.0
		100	98.0

실무차원에서 미소기준의 활용이 미흡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총 102명 중 담당자의 FTA관련 지식 부족이 29명(28.4%)으로 가장 많았다. 화주 관련 서류 준비 부족 24명(23.5%), 화주 지식 부족 23명(22.5%), 화주의 원가관리 실패(16.7%), 세번확인능력 부족 및 확인 불가능 9명(8.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9> 미소기준 활용미흡이유

항목		빈도	퍼센트
활 용 미 흡 이 유	화주 관련 서류부족 부족	23	22.5
	화주 원가관리 실패	24	23.5
	세번 확인능력 부족 및	17	16.7
	확인 불가능	9	8.8
	담당자 FTA 지식 부족	29	28.4
	전체	102	100.0

미소기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총 102명 중 화주의 관심 부족이 34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적용미미한 형식적인 규정이 26명(25.5%)로 그다음이었고 중요성이 낮

은 원산지 기준 25명(24.5%), 노력대비 관세혜택 미미 11명(10.8%),정부의 관심 부족 6명(5.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0> 미소기준 교육부족이유**

항목		빈도	퍼센트
교육부족이유	정부 관심 부족	6	5.9
	노력 대비 관세 혜택 미미	34	33.3
	적용비비한 형식적인 규정	11	10.8
	중요성 낮은 원산지기준	26	25.5
	전체	25	24.5
전체		102	100.0

미소기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행동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총 102명 중 담당자 대상 홍보 및 교육이 53명(52.0%)로 가장 많았고 미소기준 비즈니스 모델 개발 24명(23.5%), FTA 전산시스템 구축 21명(20.6%), FTA 재협상을 통한 미소기준 재개정 3명(2.9%), 기타 1명(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1> 미소기준 필요한 행동**

항목		빈도	퍼센트
필요한 행동	담당자 대상 홍보 및 교육	53	52.0
	FTA 전산시스템 구축	24	23.5
	FTA 재협상을 통한	21	20.6
	미소기준 개정	3	2.9
	기타	1	1.0
	전체	102	100.0

바. FTA 재협상을 통한 미소기준 개정

미소기준 개정 질문의 응답을 보면 총 102명 중 72명(70.6%)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30명(29.4%)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22> 미소기준 개정 찬반  
항목

항목		빈도	퍼센트
미소기준 개정	개정 불필요	72	70.6
	개정 필요	30	29.4
	전체	102	100.0

어떤 국가의 FTA 미소기준이 우선 개정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1순위는 미국으로 총 78명 중 29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8명(17.6%), 아세안 14명(13.7%) 등등으로 나타났다.

<표4-23> 미소기준 개정 1순위 FTA  
빈도

항목		빈도	퍼센트
1순위 개정 FTA	칠레	4	3.9
	싱가포르	1	1.0
	EFTA	2	2.0
	아세안	14	13.7
	인도	4	3.9
	EU	4	3.9
	미국	29	28.4
	중국	18	17.6
	베트남	1	1.0
	콜롬비아	1	1.0
	전체	78	76.5

이들 국가의 FTA 미소기준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총 76명 중 41명(40.5%)이 우리나라 주요수출국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고, 미소기준 규정 자체가 엄격 28명(27.5%), 우리나라에 불리가 6명(5.9%), 기타 1명(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4> 미소기준 개정이유**  
빈도

항목		빈도	퍼센트
개정 이유	규정이 엄격	28	27.5
	우리나라에 불리	6	5.9
	우리나라 주요수출국	41	40.2
	기타	1	1.0
	전체	76	74.5

미소기준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보면 총 88명 중 역외산 허용비율 제고가 26명(25.5%)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마다 달리 개정 19명(18.6%), 예외조항 완화·폐지 16명(15.7%), 모든 품목에 적용 14명(13.7%), 적용금지품목 축소·폐지 9명(8.8%), 민감품목 완화 및 제한 금지 4명(3.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5> 미소기준 개정방향**  
빈도

항목		빈도	퍼센트
개정 방향	모든 품목에 적용	14	13.7
	예외조항 완화, 폐지	16	15.7
	적용금지품목 축소, 폐지	9	8.8
	역외산재료 허용비율 제고	26	25.5
	민감품목 완화, 제한 금지	4	3.9
	품목마다 달리 개정	19	18.6
	전체	88	86.3

## 2. 교차분석 결과

### 가. 화주관세사 집단차이(업체형태)에 따른 교차분석

화주관세사와 FTA 미소기준 활용실적에 대한 교차분석을 보면, 화주그룹 51명 중, 미소기준 활용실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5명(9.8%)이며, 활용실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46명(90.2%)로 나타났다. 관세그룹 51명 중, 미소기준 활용실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7명(33.3%)이며, 미소기준 활용실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34명(66.7%)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을 실증해보면,  $\chi^2$  값은 8.345이며, 유의확률이 .004로 유의성이  $p < .05$ 이므로 화주관세사 집단차이에 따른 FTA 미소기준 활용실적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화주관세사\*활용실적 교차분석 (N=102)

화주관세사	업체형태	활용실적		$\chi^2$
		없음	있음	
화주관세사	화주그룹	46 (90.2)	5 (9.8)	8.345***
	관세그룹	34 (66.7)	17 (33.3)	
계		80 (78.4)	22 (21.6)	

$p^* < .1$ ,  $p^{**} < .05$ ,  $p^{***} < .01$

화주관세사와 FTA 미소기준 실패경험에 대한 교차분석을 보면, 화주그룹 51명 중, 미소기준 실패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명(3.9%)이며, 실패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49명(96.1%)로 나타났다. 관세그룹 51명 중, 미소기준 실패

패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4명(27.5%)이며, 미소기준 실패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37명(72.5%)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을 실증해보면,  $x^2$ 값은 10.674이며, 유의확률이 .001로 유의성이  $p < .05$ 이므로 화주관세사 집단차이에 따른 FTA 미소기준 실패경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화주관세사\*실패경험 교차분석 (N=102)

화 주 관 세 사	구분	실패경험(%)		$x^2$
		없음	있음	
화 주 관 세 사	화주그룹	49 (96.1)	2 (3.9)	10.674***
	관세그룹	37 (72.5)	14 (27.5)	
계		86 (84.3)	16 (15.7)	

$p^* < .1$ ,  $p^{**} < .05$ ,  $p^{***} < .01$

화주관세사와 FTA 미소기준 실패이유에 대한 교차분석을 보면, 실패경험이 있는 화주그룹 2명 중, 2명(100%)이 미소기준 규정 착각을 미소기준 실패의 이유로 들었다. 실패경험이 있는 관세그룹 14명 중, 6명(28.6%)이 화주의 원가관리 실패를 미소기준 실패의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원산지 증명 서류 문제 4명(28.6%), 사후검증에서 문제 발생 2명(14.3%), 미소기준 규정 착각 1명(7.1%), 기타 1명(7.1%) 순으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을 실증해보면,  $x^2$ 값은 9.905이며, 유의확률이 .042로 유의성이  $p > .05$ 이므로 화주관세사 집단차이에 따른 FTA 미소기준 실패이유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화주관세사\*실패이유 교차분석 (N=16)

구분		실패이유(%)					$x^2$
		미소 기준 규정 착각	화주의 원가 관리 실패	원산지 증명 서류 문제 발생	사후 검증 인정 못 받음	기타	
화 주 관 세 사	화주 그룹	2 (100.0)	0 (0.0)	0 (0.0)	0 (0.0)	0 (0.0)	9.905**
	관세 그룹	1 (7.1)	6 (42.9)	4 (28.6)	2 (14.3)	1 (7.1)	
계		3 (18.8)	6 (37.5)	4 (25.0)	2 (12.5)	1 (6.3)	

$p^* < .1$ ,  $p^{**} < .05$ ,  $p^{***} < .01$

화주관세사와 FTA 미소기준 규정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교차분석을 보면, 화주그룹 49명 중, 13명(26.5%)이 각각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이 낮음과 협정별 기준가격이 다름을 미소기준 규정 자체의 문제점으로 응답했다. 미소기준 해석 분쟁 존재 11명(22.4%), 모든 품목 적용안됨 6명(12.2%), 적용 품목 예외조항 3명(6.1%), 민감품목 관련 효과 없음 3명(6.1%)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그룹 51명 중, 16명(31.4%)이 모든 품목 적용안됨을 미소기준 규정 자체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협정별 기준가격이 다름이 9명(17.6%),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 낮음이 8명(15.7%), 민감품목 관련 효과 없음이 7명(13.7%), 적용품목 예외조항이 3명(5.9%), 기타 2명(3.9%) 순으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을 실증해보면,  $x^2$ 값은 10.316이며, 유의확률이 .112로 유의성이  $p > .05$ 이므로, 화주관세사 집단차이에 따른 FTA 미소기준 규정 자체의 문제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화주관세사\*미소기준문제점 교차분석 (N=100)

구분	미소기준문제점(%)							$\chi^2$
	모든 품목 적용 안됨	적용 품목 예외 조항	역외 산 재료 허용 비율 낮음	협정 별 기준 가격 다름	민감 품목 관련 효과 없음	미소 기준 해석 분쟁 존재	기타	
화주관세사	6 (12.2)	3 (6.1)	13 (26.5)	13 (26.5)	3 (6.1)	11 (22.4)	0 (0.0)	10.316
세관	16 (31.4)	3 (5.9)	8 (15.7)	9 (17.6)	6 (11.8)	7 (13.7)	2 (3.9)	
계	22 (22.0)	6 (6.0)	21 (21.0)	22 (22.0)	9 (9.0)	18 (18.0)	2 (2.0)	

$p^* < .1$ ,  $p^{**} < .05$ ,  $p^{***} < .01$

화주관세사와 FTA 미소기준 활용미흡이유에 대한 교차분석을 보면, 화주 그룹 51명 중, 18명(35.3%)이 담당자의 FTA 지식부족을 활용이 미흡한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화주 지식 부족 16명(31.4%), 화주 관련 서류준비 부족 11명(21.6%), 화주 원가관리 실패 3명(5.9%), 세번확인 능력 부족 및 확인 불가능 3명(5.9%)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그룹 51명 중, 14명(27.5%)이 화주 원가관리 실패를 미소기준 활용미흡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화주 관련 서류준비 부족 13명(25.5%), 담당자의 FTA 지식부족 11명(21.6%), 화주 지식 부족 7명(13.7%), 세번확인 능력 부족 및 확인 불가

능 6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을 실증해보면,  $\chi^2$ 값은 13.496이며, 유의확률이 .009로 유의성이  $p < .05$ 이므로, 화주관세사 집단차이에 따른 FTA 미소기준 활용 미흡 이유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화주관세사\*활용미흡이유 교차분석 (N=102)

구분	활용미흡이유(%)					$\chi^2$
	화주 지식 부족	화주 관련 서류 준비 부족	화주 원가 관리 실패	세번 확인 능력 부족 및 확인 불가능	담당자 FTA 지식 부족	
화주관세사 그룹	16 (31.4)	11 (21.6)	3 (5.9)	3 (5.9)	18 (35.3)	13.496***
사 그룹	7 (13.7)	13 (25.5)	14 (27.5)	6 (11.8)	11 (21.6)	
전체	23 (22.5)	24 (23.5)	17 (16.7)	9 (8.8)	29 (28.4)	

$p^* < .1$ ,  $p^{**} < .05$ ,  $p^{***} < .01$

화주관세사와 FTA 미소기준 교육부족이유에 대한 교차분석을 보면, 화주 그룹 51명 중, 15명(29.4%)이 미소기준이 적용 미미한 형식적인 규정이라는 점을 교육부족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중요성이 낮은 원산지기준 12명(23.5%), 화주 관심 부족 10명(21.6%), 노력 대비 관세혜택 미미 9명(17.6%), 정부 관심 부족 5명(5.9%)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그룹 51명 중, 24명(47.1%)이 화주 관심 부족을 교육부족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중요성이 낮은 원산지기준 13명(25.5%), 적용 미미한 형식적인 규정 11명(21.6%), 노력 대비 관세혜택 미미 2명(3.9%), 정부 관심 부족 1명(2.0%) 순으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을 실증해보면,  $\chi^2$ 값은 13.541이며, 유의확률이 .009로 유의성이  $p < .05$ 이므로, 화주관세사 집단차이에 따른 FTA 미소기준 교육부족 이 유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화주관세사\*교육부족이유 교차분석 (N=102)

구분	교육부족이유(%)					$\chi^2$
	정부 관심 부족	화주 관심 부족	노력 대비 관세 혜택 미미	적용 미미한 형식적 인 규정	중요성 낮은 원산지 기준	
화주 관 세 사 관 세 그 룹	5 (9.8)	10 (19.6)	9 (17.6)	15 (29.4)	12 (23.5)	13.541***
사 세 그 룹	1 (2.0)	24 (47.1)	2 (3.9)	11 (21.6)	13 (25.5)	
계	6 (5.9)	34 (33.3)	11 (10.8)	26 (25.5)	25 (24.5)	

$p^* < .1$ ,  $p^{**} < .05$ ,  $p^{***} < .01$

화주관세사와 FTA 미소기준 활용제고 필요한 행동에 대한 교차분석을 보면, 화주그룹 51명 중, 27명(52.9%)이 담당 대상자 홍보 및 교육을 가장 필요한 행동으로 응답했다. FTA 전산시스템 구축 14명(27.5%), 미소기준

비즈니스 모델 개발 8명(15.7%), FTA 재협상을 통한 미소기준 개정 9명(3.9%)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그룹 51명 중, 26명(51.0%)이 담당 대상자 홍보 및 교육을 가장 필요한 행동으로 응답했다. 미소기준 비즈니스 모델 개발 16명(31.4%), FTA 전산시스템 구축 7명(13.7%), FTA 재협상을 통한 미소기준 개정 1명(2.0%), 기타(2.0%) 순으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을 실증해보면,  $x^2$  값은 6.352이며, 유의확률이 .174로 유의성이  $p > .05$ 이므로, 화주관세사 집단차이에 따른 FTA 미소기준 활용제고 필요한 행동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화주관세사\*필요한 행동 교차분석 (N=102)

구분	담당자 대상 홍보 교육	필요한 행동(%)				$x^2$
		미소 기준 비즈니스 모델 개발	FTA 전산 시스템 구축	FTA 재협상을 통한 미소 기준 개정	기타	
화주관세사	27 (52.9)	8 (15.7)	14 (27.5)	2 (3.9)	0 (0.0)	6.352
세그룹	26 (51.0)	16 (31.4)	7 (13.7)	1 (2.0)	1 (2.0)	
계	53 (52.0)	24 (23.5)	21 (20.6)	3 (2.9)	1 (1.0)	

$p^* < .1$ ,  $p^{**} < .05$ ,  $p^{***} < .01$

화주관세사와 FTA 미소기준 개정에 대한 교차분석을 보면, 화주그룹 51명 중, 미소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34명(66.7%)이며,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는 17명(33.3%)로 나타났다.

관세그룹 51명 중, 미소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38명(74.5%)이며,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는 13명(25.5%)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을 실증해보면,  $\chi^2$  값은 0.756이며, 유의확률이 .385로 유의성이  $p > .05$ 이므로 화주관세사 집단차이에 따른 FTA 미소기준 개정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화주관세사\*미소기준개정 교차분석 (N=102)**

구분	미소기준개정		$\chi^2$
	개정 불필요	개정 필요	
화주	17	34	0.756
그룹	(33.3)	(66.7)	
관세	13	38	
사	(25.5)	(74.5)	
그룹	30	72	
계	(29.4)	(70.6)	

$p^* < .1$ ,  $p^{**} < .05$ ,  $p^{***} < .01$

화주관세사와 FTA 미소기준 개정방향에 대한 교차분석을 보면, 화주그룹 40명 중, 적용금지품목 축소 폐지와 민감품목 완화 및 제한금지 각각 2명(5.0%)를 제외하고 모든 품목에 적용, 예외조항 완화·폐지,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 제고, 품목마다 달리 개정이 모두 9명(22.5%)을 나타내었다.

관세그룹 51명 중, 17명(35.4%)이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 제고를 가장 필요한 행동으로 응답했다. 품목마다 달리 개정 16명(20.8%), 예외조항 완화·폐지와 적용금지품목 축소·폐지 각각 7명(14.6%), 모든 품목에 적용

5명(10.4%), 민감품목 완화 및 제한금지 2명(4.2%) 순으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을 실증해보면,  $\chi^2$ 값은 6.007이며, 유의확률이 .306으로 유의성이  $p > .05$ 이므로, 화주관세사 집단차이에 따른 FTA 개정방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화주관세사\*개정방향 교차분석 (N=88)

구분	개정방향						$\chi^2$
	모든 품목에 적용	예외 조항 완화 폐지	적용 금지 품목 축소 폐지	역외 산 재료 허용 비율 제고	민감 품목 완화 제한 금지	품목 마다 달리 개정	
화주관세사	9 (22.5)	9 (22.5)	2 (5.0)	9 (22.5)	2 (5.0)	9 (22.5)	6.007
화주관세사	5 (10.4)	7 (14.6)	7 (14.6)	17 (35.4)	2 (4.2)	10 (20.8)	
계	14 (15.9)	16 (18.2)	9 (10.2)	26 (29.5)	4 (4.5)	19 (21.6)	

$p^* < .1$ ,  $p^{**} < .05$ ,  $p^{***} < .01$

## 나. 활용실적 유무에 따른 교차분석

활용실적과 FTA 미소기준 규정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교차분석을 보면, 미활용그룹 78명 중, 17명(26.5%)이 모든 품목적용 안됨, 협정별 기준가격 다름, 미소기준 해석 분쟁 존재가 각각 5명(22.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민감품목 관련 효과 없음 6명(7.7%), 적용품목 예외조항 4명(5.1%), 기타 1명(1.3%)이 그 뒤를 이었다.

활용그룹 22명 중, 모든 품목적용 안됨, 역외산재료허용비율 낮음, 협정별 기준가격 다름이 각각 5명(22.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민감품목 관련 효과 없음 3명(13.6%), 적용품목 예외조항 2명(9.1%), 미소기준 해석 분쟁 존재와 기타가 각각 1명(4.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본 교차분석을 실증해보면,  $\chi^2$ 값은 4.927이며, 유의확률이 .553로 유의성이  $p > .05$ 이므로, 활용실적 유무에 따른 FTA 미소기준 규정 자체의 문제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활용실적\*미소기준문제점 교차분석 (N=100)

구분	미소기준문제점							$\chi^2$
	모든 품목 적용 안됨	적용 품목 예외 조항	역외 산 재료 허용 비율 낮음	협정 별 기준 가격 다름	민감 품목 관련 효과 없음	미소 기준 해석 분쟁 존재	기타	
활용실적 없음	17 (21.8)	4 (5.1)	16 (20.5)	17 (21.8)	6 (7.7)	17 (21.8)	1 (1.3)	4.927
활용실적 있음	5 (22.7)	2 (9.1)	5 (22.7)	5 (22.7)	3 (13.6)	1 (4.5)	1 (4.5)	
계	22 (22.0)	6 (6.0)	21 (21.0)	22 (22.0)	9 (9.0)	18 (18.0)	2 (2.0)	

$p^* < .1$ ,  $p^{**} < .05$ ,  $p^{***} < .01$

활용실적과 FTA 미소기준 활용미흡이유에 대한 교차분석을 보면, 미활용 그룹 80명 중, 24명(30.0%)이 담당자의 FTA 지식부족을 활용이 미흡한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화주 지식 부족 21명(26.3%), 화주 관련 서류 준비 부족 20명(25.0%), 세번확인 능력 부족 및 확인 불가능 8명(10.0%), 화주의 원가관리 실패 7명(8.8%) 순으로 나타났다.

활용그룹 22명 중, 10명(27.5%)이 화주 원가관리 실패를 미소기준 활용미흡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담당자의 FTA 지식부족 5명(22.7%), 화주 관련 서류 준비 부족 4명(18.2%), 화주 지식 부족 2명(9.1%), 세번확인 능력 부족 및 확인 불가능 1명(4.5%) 순으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을 실증해보면,  $\chi^2$ 값은 17.445이며, 유의확률이 .002로 유의성이  $p < .05$ 이므로, 활용실적 유무에 따른 FTA 미소기준 활용 미흡 이유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활용실적\*활용미흡이유 교차분석 (N=102)

구분	활용미흡이유(%)					$\chi^2$
	화주 지식 부족	화주 관련 서류 준비 부족	화주 원가 관리 실패	세번 확인 능력 부족 및 확인 불가능	담당자 FTA 지식 부족	
활용 없음	21 (26.3)	20 (25.0)	7 (8.8)	8 (10.0)	24 (30.0)	17.445***
활용 있음	2 (9.1)	4 (18.2)	10 (45.5)	1 (4.5)	5 (22.7)	
계	23 (22.5)	24 (23.5)	17 (16.7)	9 (8.8)	29 (28.4)	

$p^* < .1$ ,  $p^{**} < .05$ ,  $p^{***} < .01$

활용실적과 FTA 미소기준 교육부족이유에 대한 교차분석을 보면, 미활용 그룹 80명 중, 24명(30.0%)이 미소기준이 적용 미미한 형식적인 규정이라는 점을 교육부족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중요성이 낮은 원산지기준 23명(28.8%), 화주 관심 부족 19명(23.8%), 노력 대비 관세혜택 미미 9명(11.3%), 정부 관심 부족 5명(6.3%) 순으로 나타났다.

활용그룹 22명 중, 15명(68.2%)이 화주 관심 부족을 교육부족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노력 대비 관세혜택 미미 2명(9.1%), 적용 미미한 형식적인 규정 2명(9.1%), 중요성이 낮은 원산지기준 2명(9.1%), 정부 관심 부족 1명(4.5%) 순으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을 실증해보면,  $\chi^2$ 값은 16.059이며, 유의확률이 .003로 유의성이  $p < .05$ 이므로, 활용실적 유무에 따른 FTA 미소기준 교육부족이유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활용실적\*교육부족이유 교차분석 (N=102)**

구분	교육부족이유(%)					$\chi^2$
	정부 관심 부족	화주 관심 부족	노력 대비 관세 혜택 미미	적용 미미한 형식적인 규정	중요성 낮은 원산지 기준	
활 용 실 적 없 음	5 (6.3)	19 (23.8)	9 (11.3)	24 (30.0)	23 (28.8)	16.059 ***
있 음	1 (4.5)	15 (68.2)	2 (9.1)	2 (9.1)	2 (9.1)	
계	6 (5.9)	34 (33.3)	11 (10.8)	26 (25.5)	25 (24.5)	

$p^* < .1$ ,  $p^{**} < .05$ ,  $p^{***} < .01$

활용실적과 FTA 미소기준 활용제고 필요한 행동에 대한 교차분석을 보면, 미활용그룹 80명 중, 39명(48.8%)이 담당자 대상 홍보 및 교육을 가장 필요한 행동으로 응답했다. 미소기준 비즈니스 모델 개발 21명(26.3%), FTA 전산시스템 구축 17명(21.3%), FTA 재협상을 통한 미소기준 개정 3명(3.8%) 순으로 나타났다.

활용그룹 22명 중, 14명(63.6%)이 담당자 대상 홍보 및 교육을 가장 필요한 행동으로 응답했다. FTA 전산시스템 구축 4명(18.2%), 미소기준 비즈니스 모델 개발 3명(13.6%), 기타(2.0%)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을 실증해보면,  $\chi^2$ 값은 6.443이며, 유의확률이 .168로 유의성이  $p > .05$ 이므로, 활용실적 유무에 따른 FTA 미소기준 활용제고 필요한 행동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8> 활용실적\*필요한 행동 교차분석 (N=102)

구분	담당자 대상 홍보 교육	필요한 행동				$\chi^2$
		미소 기준 비즈니스 모델 개발	FTA 전산 시스템 구축	FTA 재협상을 통한 미소 기준 개정	기타	
활용 없음	39 (48.8)	21 (26.3)	17 (21.3)	3 (3.8)	0 (0.0)	6.443
활용 있음	14 (63.6)	3 (13.6)	4 (18.2)	0 (0.0)	1 (4.5)	
계	53 (52.0)	24 (23.5)	21 (20.6)	3 (2.9)	1 (1.0)	

$p^* < .1$ ,  $p^{**} < .05$ ,  $p^{***} < .01$

활용실적과 FTA 미소기준 개정에 대한 교차분석을 보면, 미활용그룹 80명 중, 미소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53명(66.3%)이며,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는 27명(33.8%)로 나타났다.

활용그룹 22명 중, 미소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19명(86.4%)이며,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는 3명(13.6%)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을 실증해보면,  $\chi^2$  값은 3.362이며, 유의확률이 .067로 유의성이  $p > .05$ 이므로 활용실적 유무에 따른 FTA 미소기준 개정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활용실적\*미소기준개정 교차분석 (N=102)

구분	미소기준개정		$\chi^2$
	개정 불필요	개정 필요	
활용실적 없음	27 (33.8)	53 (66.3)	3.362
활용실적 있음	3 (13.6)	19 (86.4)	
계	30 (29.4)	72 (70.6)	

$p < .1$ ,  $p^{**} < .05$ ,  $p^{***} < .01$

활용실적과 FTA 미소기준 개정방향에 대한 교차분석을 보면, 미활용그룹 68명 중, 19명(27.9%)이 품목마다 달리 개정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 제고 15명(22.1%), 모든 품목에 적용과 예외조항 완화·폐지가 각각 11명(16.2%), 적용금지품목 축소·폐지 8명(11.8%), 민감품목 완화·제한금지 4명(5.9%) 순으로 나타났다.

활용그룹 20명 중, 11명(55.0%)이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 제고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예외조항 완화·폐지 5명(25.0%), 모든 품목에 적용 3명

(15.0%), 적용금지 품목 축소·폐지 1명(5.0%) 순으로 나타났다.

본 교차분석을 실증해보면,  $\chi^2$ 값은 13.807이며, 유의확률이 .017으로 유의성이  $p > .05$ 이므로, 활용실적 유무에 따른 FTA 개정방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활용실적\*개정방향 교차분석 (N=88)

구분		개정방향(%)					$\chi^2$	
		모든 품목에 적용	예외 조항 완화 폐지	적용 금지 품목 축소 폐지	역외산 재료 허용 비율 제고	민감 품목 완화 제한 금지		품목 마다 달리 개정
활용실적	없음	11 (16.2)	11 (16.2)	8 (11.8)	15 (22.1)	4 (5.9)	19 (27.9)	13.807**
	있음	3 (15.0)	5 (25.0)	1 (5.0)	11 (55.0)	0 (0.0)	0 (0.0)	
	계	14 (15.9)	16 (18.2)	9 (10.2)	26 (29.5)	4 (4.5)	19 (21.6)	

$p^* < .1$ ,  $p^{**} < .05$ ,  $p^{***} < .01$

## V. 결 론

###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소기준의 활용실적이 예상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주관세사 집단차이에 따른 교차분석을 보면, 관세그룹이 화주그룹보다 활용실적이 더 많고, 미소기준 적용 실패경험 역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 이유로 화주그룹은 ‘미소기준 규정 착각’에 관세그룹은 ‘화주의 원가관리 실패’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둘째, 미소기준에 대한 인식수준도 그다지 높지 않으며 활용품목도 다양하지 않았다. 대체로 미소기준이 원산지자격을 확대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하는 편이었으나, 활용을 위한 축적된 노하우나 비즈니스 모델이 부재하였다. 본 설문은 활용자들은 15개의 체결 FTA 모두에 미소기준을 적용한 경험이 있었으나 활용품목은 그렇지 않았다. 주로 일반기계류나 전기·전자제품 같은 품목에 미소기준의 활용이 많았다.

셋째, 화주관세사 집단차이에 따른 교차분석을 보면 활용미흡이유와 교육부족이유에서 유의한 응답 경향의 차이를 보였는데, 활용미흡이유로 화주그룹은 ‘담당자의 FTA 지식 부족’에 관세그룹은 ‘화주의 원가관리 실패’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교육부족이유로는 화주그룹은 ‘적용 미미한 형식적인 규정’에 관세그룹은 ‘화주관심부족’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밖에 미소기준의 문제점, 가장 필요한 행동, 개정찬반, 개정방향에는 유의한 응답 경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가장 필요한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교차분

석에서 화주그룹은 응답이 여러 개의 문항에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고, 관세그룹은 응답이 하나의 문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미소기준의 문제점으로 화주그룹은 ‘역외산재료 허용비율 낮음’ 과 ‘협정별 기준 가격 다름’에 관세그룹은 ‘모든 품목에 적용 안됨’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가장 필요한 행동으로 두 그룹 모두 ‘담당자 대상 홍보 및 교육’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개정 찬반 역시 두 그룹 모두 ‘개정 필요’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개정 방향으로는 화주그룹은 ‘모든 품목에 적용’, ‘예외조항 완화 및 폐지’,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 제고’, ‘유불리를 따져 품목마다 달리 개정’에 관세그룹은 ‘역외산 재료 허용 비율 제고’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넷째, 활용실적 유무에 따른 교차분석을 보면, 화주관세사 집단과 마찬가지로 활용미흡이유와 교육부족이유에서 유의한 응답 경향의 차이를 보였으며, 개정방향에서도 유의한 응답 경향의 차이를 보였다. 활용미흡이유로 미활용그룹은 ‘담당자의 FTA 지식부족’에 활용그룹은 ‘화주의 원가관리 실패’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교육부족이유로는 미활용그룹은 ‘적용미미한 형식적인 규정’에 활용그룹은 ‘화주의 관심 부족’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개정 방향으로 미활용그룹은 ‘유불리를 따져 품목마다 달리 개정’에 활용그룹은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 제고’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활용그룹의 경우, 미활용그룹이 가장 많이 응답한 ‘유불리를 따져 품목마다 달리 개정’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유의한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 밖에 미소기준의 문제점, 가장 필요한 행동, 개정 찬반에서는 유의한 응답 경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미소기준의 문제점으로 미활용그룹은 ‘모든 품목 적용에 안됨’, ‘협정별 기준가격 다름’, ‘미소기준 해석 분쟁 존재’에 활용그룹은 ‘모든 품목 적용에 안됨’,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 낮음’, ‘협정별 기준가격 다름’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가장 필요한 행동으로는 두 그룹 모두 ‘담당자 대상 홍보 및 교육’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개정 찬반에서도

두 그룹 모두 ‘개정 필요’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소기준의 활용에 있어, 관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당사자인 화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두 번의 교차분석 모두 활용미흡이유와 교육부족이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관세그룹과 활용그룹 모두 ‘화주의 원가관리 실패’와 ‘화주의 관심 부족’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화주의 관심’과 ‘화주의 원가관리’가 미소기준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둘째,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FTA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두 번의 교차분석 결과, 활용실적 및 실패경험에서 전문성을 갖춘 관세그룹이 화주그룹보다 미소기준의 활용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소기준문제점에서 화주그룹 및 미활용그룹은 ‘미소기준 해석 분쟁있음’에 높은 응답 분포를 보임으로써 미소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모두에서 미소기준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행동으로 ‘담당자 대상 홍보 및 교육’에 압도적인 응답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실무자들의 FTA 활용능력과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FTA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소기준을 개정한다면 역외산 재료의 허용비율을 제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빈도분석과 두 번의 교차분석에서 관세그룹과 활용그룹 모두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 제고’를 미소기준 개정 방향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역외산 재료의 허용비율을 10%를 초과해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음 체결한 한-칠레 FTA의 역외산 재료의 허용비율(일반품목 : 8%, 섬유품목 : 8%)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섬유품목의 역외산 재료의 허용비율도 최소 1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FTA 미소기

준에서 섬유품목에 관한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싱가포르 FTA(8%), 한-인도 FTA(7%), 한-미국 FTA(7%) 등은 그렇지 않으므로 상향 조정해, 엄격한 섬유제품의 원산지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아세안 FTA 수준(모든 품목 :10%)으로 미소기준이 단순해져야 한다.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미소기준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자 하였으나, 미소기준 관련 통계가 공개되지 않고 또한 미소기준의 활용이 극히 드문 상황 속에서 미소기준 활용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고, 무작위로 설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 설문대상의 FTA에 관한 인식 및 지식수준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비록 설문대상이 관세사를 중심으로 한 관세그룹과 FTA 교육을 받은 화주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 간에는 명백히 인식 및 지식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미소기준은 주목도가 낮은 영역임에도 설문지의 질문 자체가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다.

셋째, 실무적으로 미소기준을 활용할 때,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과 애로를 겪을 수 있는데, 설문지를 통한 양적 분석만으로는 미소기준 활용실태의 전모를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향후 미소기준 활용자를 대상으로 면접과 같은 질적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미소기준 관련 통계 및 사례에 대한 정보접근이 잘 이루어진다면 미소기준 비즈니스 모델 및 품목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FTA 특례조항에 관한 심도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미소기준, 누적기준, 중간재기준에 대한 비교분석 및 연관분석을 실시하는 높은 수준의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강상호(2018), HS 기계류에 대한 FTA 미소기준 활용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순국(2012),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4호, 101-118.
- 고용부(2016). 우리나라 FTA 협정상 원산지 규정의 의의 및 결정기준비교. 통상법률, 71호, 10-39.
- 김구태(2018), 미소기준의 개념 정립 및 실무적용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 한국관세학회 2018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 143-150.
- 김영훈(2014), FTA원산지기준상 특례에 관한 일고, 한국관세학회 2014년 동계학술발표대회, 105-122.
- 김태인, 이준건(2014), FTA 인지도 및 활용도가 FTA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3호, 225-251.
- 김형철, 김희철, 라공우, 한·중 각국이 체결한 FTA협정의 원산지 규정 비교 연구, 무역학회지, 제41권 제1호, 139-158.
- 박진후(2014),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관세사 업계의 부가가치 창출,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갑용(2007), 「FTA 원산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이명구, 정재완, 정재호(2016), 「FTA 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청람.
- 이석동, 이춘수(2015), 한·미 FTA 섬유류 협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무역학회지, 제40권 제2호, 71-91.
- 이영달, 이신규(2016), 한·중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1호, 27-50.

이진철, 유광현(2016), 한국식품 수출을 위한 한·중 FTA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1호, 77-97.

이제홍(2013), FTA 체결국 수입제품 소비자의 후생수준에 관한 기술통계분석,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2호, 365-383.

정순태(2012), FTA 특혜원산지규정의 문제점과 조화, 관세학회지, 13권 제2호, 93-110.

정재승, 정윤태(2013), 무역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4호, 171-192.

국제원산지정보원(2014), '협정별 불인정공정 및 최소허용기준 사례수집 및 연구분석', 197-255.

## 2. 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칠레 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인도 공화국 정부간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정부간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페루 공화국 정부간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터키 공화국 정부간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호주 정부간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 정부간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대한민국정부와 콜롬비아 공화국 정부간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 3. 참고 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 <http://www.fta.go.kr>

관세청 FTA 포털 <http://www.customs.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FTA미소기준 활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 설문지

### 연구목적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FTA 미소기준의 활용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미소기준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술자료로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귀사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개별 정보 노출에 우려가 있는 경우 통계법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하는 등 비밀보장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2018년 10월 9일

책임 연구원 : 조 찬 혁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연구자 : 고 태 인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석사과정)

전화 : 010-3687-1427

이메일 : [pinegoh41@gmail.com](mailto:pinegoh41@gmail.com)

A	설문참여자 배경 정보
---	-------------

A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A2. 귀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 )세

A3. 귀하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중졸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졸

A4.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 ① 사무원 ② 사무장 ③ 임원 ④ 관세사 ⑤ 사장 ⑥ 기타

A5. 귀하의 **사무소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관세법인 ② 합동관세사 ③ 개인관세사무소 ④ 화주(수출업체) ⑤ 기타

A6. 귀하의 **종업원 수**는 몇 명입니까? ( )명

A7. 귀사의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 )원/2017년기준

A8. 귀사의 **설립연도**는 언제입니까? ( )년

<b>B</b>	<b>미소기준 활용</b>
----------	----------------

B1. 미소기준을 **활용실적** 있습니까?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정)

① 있다 ② 없다 → B6문항으로

B2. 미소기준 **활용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        )회

B3. 과거 대비, 미소기준 **활용실적(활용률)**은 어떻습니까?

① 매우감소 ② 감소 ③ 변화 없다 ④ 증가 ⑤ 매우 증가

B4. 전체 FTA 관련 업무 중 미소기준 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체감상 (        )% \* 주관적으로 기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B5. 미소기준을 어떤 국가의 FTA, 어떤 품목에 적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귀사의 실제 미소기준 실적을 바탕으로 답변해주세요.

[적용FTA] (중복체크 가능 √)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 ④ 여타의 이유로 사후검증에서 미소기준 활용을 인정받지 못함  
 ⑤ 기타 ( : )

<b>C</b>	<b>미소기준 인식</b>
----------	----------------

※ 해당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미소기준은 원산지 자격을 확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협정별 미소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미소기준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미소기준을 이용한 FTA 비즈니스 모델이나 품목 발굴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미소기준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다/문의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나라 FTA의 미소기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미소기준에 관한 우리나라 FTA 협상 전략이 부족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D1. FTA 미소기준 규정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① 미소기준이 모든 품목에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미소기준 적용품목에 대한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 ③ 미소기준 비원산지재료 허용비율(8~10%)이 낮다.
- ④ 협정별로 기준가격이 달라, 원가관리가 어렵다.
- ⑤ 민감품목(농수산물·섬유)에 대한 미소기준 효과가 크지 않다.
- ⑥ 미소기준 해석에 관한 분쟁 소지가 있다
- ⑦ 기타: )

D2. 실무차원에서 미소기준 활용이 미흡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① 화주의 지식부족
- ② 화주들의 입증서류·원가내역서 등의 준비 부담
- ③ 화주의 원가관리 실패
- ④ 섬유류의 경우 중량에 대한 정확성 담보미흡
- ⑤ 세번확인능력 부족 및 세번변경 확인 불가능
- ⑥ 담당자의 FTA 전반 관련 법·정보지식 부족

D3. 미소기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① 정부의 관심부족 ② 화주들의 관심 부족 ③ 노력 대비 관세 절감 혜택 미미 ④ 적용가능성이 낮은 형식적인 규정이므로 ⑤ 원산지 기준 중 중요성이 낮으므로

D4. FTA 미소기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① 담당자들에 대한 미소기준에 관한 홍보 및 교육  
 ② 미소기준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미소기준 적용 품목 대상 적극 발굴  
 ③ 원가관리시스템을 비롯한 FTA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④ 현 FTA상의 미소기준에 한계가 존재, FTA 재협상을 통한 개정 필요  
 ⑤ 기타 ( )

E	FTA 재협상
---	---------

E1. 향후 FTA 재협상에서 미소기준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① 개정 필요 ② 개정 불필요

E2. 어떤 국가의 FTA 미소기준이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칠레 ② 싱가포르 ③ EFTA ④ 아세안 ⑤ 인도 ⑥ EU ⑦ 페루 ⑧ 미국  
 ⑨ 터키 ⑩ 호주 ⑪ 캐나다 ⑫ 중국 ⑬ 뉴질랜드 ⑭ 베트남 ⑮ 콜롬비아

E2\_1.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① 미소기준 규정 자체가 너무 엄격
- ② 우리나라에 불리
- ③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의 FTA이므로
- ④ 기타 ( )

E3. FTA 미소기준은 향후 어떻게 개정되어야 합니까? (1개만 선택)

- ① 미소기준을 모든 품목에 적용
- ② 미소기준에 대한 예외조항 완화 또는 폐지
- ③ 미소기준 적용 금지품목 축소 또는 폐지
- ④ 미소기준 상의 비원산지재료의 비율을 제고
- ⑤ 민감품목(농수산물·섬유)에 대한 미소기준 완화나 제한 금지
- ⑥ 일률적으로 완화하거나 제한할 것이 아니라, 유·불리를 따져 품목마다 다르게 개정
- ⑦ 기타 (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